

이사회규정

2022. 4. 21.

SK 바이오팜 주식회사

제 정: 2011. 4. 1.
개 정: 2012. 2. 10.
개 정: 2012. 6. 13.
개 정: 2019. 8. 27.
개 정: 2020. 3. 5.
개 정: 2021. 4. 21.
개 정: 2022. 4. 2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SK 바이오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 2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 조의 3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조 (구성)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인사위원회(상법 제 542 조의 18 제 4 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포함)
 - 3. 거버넌스위원회
 - 4. ESG/전략위원회

- ③ 전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④ 이사회는 감사 조직은 이사회사무국으로 하고, 이사회사무국장은 이사회 감사가 된다. 또한, 제 2 항 각 위원회 별로 감사 조직을 두고 감사를 정할 수 있다.

제 3 조 (경영기본이념의 실행)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영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기본이념 및 경영관리체계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의 기업문화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이사회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 나가며 또한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환자 및 그 가족, 보건의료전문가(HCP)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수립·실행하도록 한다.

제 4 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이사회 의장이 아래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1.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2. 감사위원회 위원장
 3. ESG/전략위원회 위원장
 4. 대표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제 5 조 (회의장소 등)

- ① 이사회는 회사 본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도 이와 같다.

제 6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통지)

- ①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간사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 후 안건이 추가되거나 기존 안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에 문서, 전자문서(SMS 포함) 또는 구두(유선 통화 포함)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

제 7 조의 2 (의안 제출)

-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이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작성하여, 적어도 이사회 회의일 7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 또는 위임을 받은 임직원은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8 조 (이사회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경영지배구조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보수 등) 채택
- 2)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 3) <삭제>
- 4) 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위원회의 구성·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의 선임과 해임
- 6) 필요시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7)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8)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9) <삭제>
- 10)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11) 지배구조헌장, 이사회규정, 각 위원회 규정 및 주요 사규의 제·개정 및 폐지
- 12) 이 규정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한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체계의 정립 및 수정
- 1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14)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 15) 대표이사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 16) 이사회 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
- 17)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사항
- 18)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참가
- 19) 개별 이사 보수 결정

2. 투자 및 기획

- 1)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 2) 자회사(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5)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
- 6)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
- 7)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의 양수 및 양도. 단, 다음 각 항목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가.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나.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다.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 라. 영업전부의 양수
 - 마.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기로 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8)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산의 취득

3. 회계 및 재무

- 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영업보고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의 승인
- 2) 중간배당, 주식배당
- 3) 신주의 발행
- 4) 준비금의 자본전입
- 5) 정관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른 특정한 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6) <삭제>
- 7) <삭제>
- 8)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9) 자본감소

- 10) 자기주식의 소각
- 11)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 13) 회사채의 발행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음)
- 1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15) <삭제>
- 16) 회사 주요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 단, 회사 주요자산이라 함은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
- 17) 10 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 제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대표이사가 선집행 후 이사회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 18)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단, 1년 이내의 단기차입은 제외) 및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 19) <삭제>
- 2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4. 조직 및 인력

-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2) 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3) <삭제>
- 4) 임원관리규정의 제·개정
- 5) 상법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
- 6)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 7)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 행사
- 8)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이사회 승인
- 9) 이사 해임안 제출
- 10) 상법 제 542 조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 11)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의 결정

12)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 갱신 여부 및 보상한도)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 제도의 도입

5. 주요 경영사항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사항
- 2) 『상법』 제 542 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사항
- 3)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항의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 규정 제정을 통하거나 별도 결의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이사회 결의 외 사항)

- ① 제 8 조 및 본조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여타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고 부여되는 권한 하에서 이를 결정·집행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의 달성, 시행 및 집행
 2. 이사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
 3.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약정을 하는 행위
 4. 임직원에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위임
 5. 하기 사항에 관한 이사회 보고
 - 가. 연간 경영계획 및 연간 목표(KPI) 수립·평가
 - 나.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 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한 경우 그 집행 결과
 - 라.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결과
 - 마. 이사 선임(연임 포함) 검토 결과
 - 바.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연 1 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연 1 회 보고한다.

- ④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를 두는 경우 동 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연 1 회 보고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 1 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삭 제>

제12조 <삭 제>

제 13 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 ①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외부인사 등에게 이사회 출석,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 담당 임직원이 작성 또는 제출한 품의서, 통보서, 보고서 및 각종 회계자료 등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 그리고 회사 내 각종 위원회의 의견 등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이에 근거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 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⑥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 ⑦ 이사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⑧ 이사는 이사회에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이사가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당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삭 제>

제 16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를 주재한 의장과 회의에 출석한 모든 이사 및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②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전항의 의사록 부분을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한 임원 또는 업무상 관계 있는 임원에게 송부한다.

제 17 조 (문서의 보존)

이사회 부의 안건과 의사록은 이사회 간사가 이를 보존한다.

제 18 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외부 기관 등에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1. 4. 1.)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0.)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8 조 제 1 항 제 5 호 1) 나.의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6. 13.)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7.)

제 1 조 (시행)

- ① 본 규정은 2019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 8 조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과 자산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다.
 1.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반영한 금액)
 2.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부칙 (2020. 3. 5.)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20 년 3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1.)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21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1.)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22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